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9
----------	-----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12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조례 명칭을 바꾸고 주요내용을 전부개정하여 성평등 추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 아울러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은, 모든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안 제1조)
- “여성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집행력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의 인원을 확대하였으며(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고하였음(안 제14조)
-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여성의 취업차별 문제개선 및 경력단절 예방, 기간제·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안 제16조)
- 일·가족 양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한부모가족·장애인 가족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안 제17조 및 제18조)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 규정과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하였음(안 제21조)

- 그리고,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안 제23조)
-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음(안 제34조 및 제3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총괄

-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본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조례 명칭을 바꾸고, 주요내용을 전부개정하여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시정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세부내용

(1)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4조)

- 본 조례안 제2조는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성별 차별없이 시정서비스를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등이 마련되도록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또 안 제3조는 시민들도 시정전반에 성평등 관점 반영을 통해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성평등한 시정이 구현되도록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2)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안 제5조~제12조)

- 안 제5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현행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시행중인 여성정책 시행계획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특히 연도별 추진실적을 ‘서울시성평등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여, 현행 보다 좀 더 실행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현행 ‘여성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성인 지적 관점을 반영한 총괄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는 현행 위원회의 위원수를 “3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2명”에서 “1명”을 축소하며, 당연직 위원을 “2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그 인원의 조정을 통해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서울시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참여 위원수를 늘려 ‘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는 현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임 차수 제한을 규정(1회에 한함)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사의 진출입이 보다 쉽게 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는 정기회를 현재 “2회”에서 “4회”로 늘려 규정하고 있어, 반기별 개최에서 분기별 개최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표〉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 연도별 개최실적

연도	개최횟수	회의안건	참석 인원	참석율 (%)	전체 위원
2009	1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 개최 결과 · 여성정책 토론	21명	60	35명
2010	2	· 여성행복프로젝트 성과와 민선5기 발전방향 · 제2차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 수립	18명	51	35명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시정운영 4개년 계획	13명	37	35명
2011	1	· 여성가족정책 추진상황	19명	54	35명
2012	1	· '12년 서울시 성평등정책 추진계획 ·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추진계획	26명	74	35명

(3) 제3장 성평등촉진 정책 (안 제13조~제33조)

- 안 제14조는 각종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30%”에서 “40%”이상으로 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여성의 시각이 시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표〉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

구분	계획	실적	목표달성도 (실적/계획)
2009년	30%	30.2%	100.7%
2010년	30%	29.2%	97.3%
2011년	30%	29.5%	98.3%

- 안 제15조는 공직기회 참여를 위한 자구를 수정하여 현재 ‘양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여성고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분야’로 표현하여, 여성고용이 저조한 분야에 여성채용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음.

〈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16개 기관) 여성인력 현황
(2011. 1월말)

구 분	계	임원	관리직	일반직원
전체인원	19,325	36	1,882	17,407
여성인력	1,968	2	84	1,881
여성비율	10.2%	5.5%	4.46%	10.8%

- 안 제17조는 ‘일·가족 양립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방과 후 아동보육,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상담 및 서비스, 가족친화제도 확산 등의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가정 내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안 제19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에 “기업”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기업에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21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숙식 및 심리안정, 구조지원,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의 시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안 제23조는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도시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¹⁾를 도입하여, 투시형 엘리베이터, 안전거울, 외부 벤치 설치 등을 설계하도록 하며, 기능별로 분산관리 중인 CCTV를 한 곳에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시공간이 여성폭력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임.

또한 노후 된 공공청사를 싱글여성 전용 안심 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싱글여성을 위한 안심주택을 보급하며, 범죄취약 주택가 골목길 조명을 밝게 하는 등 귀가 길에 여성이 안전하도록 공간 및 시설을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여성친화시설 인증제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표〉 여성친화시설 인증실적 : 총 656개소

(단위 : 개)

구 분	계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계	656	375	206	35	40
'09년	258	122	118	8	10
'10년	201	107	51	20	23
'11년	197	146	37	7	7

○ 안 제24조는 여성의 건강증진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의

1) 범죄예방환경 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란 물리적 환경설계로 범행 기회를 차단하는 것임. 이는 범인과 범행 대상, 범죄 기회 등 범죄 3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시 시선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물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함.

나이에 맞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우울증 치료 및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우울증 등을 추방하는 시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임.

(4)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안 제34조~제37조)

- 안 제34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근거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한 것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명시한 것임.
- 안 제35조 내지 제37조는 「지방재정법」, 「통계법」 등에 각각 근거를 두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성인지 통계 등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정책 효과가 증진되도록 하는 것으로 신설된 조항임.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고 성인지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현행 ‘여성위원회’에 집행부 공무원을 확대하고, 위원수를 “4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 바람.
- 답변 : 현행 위원회의 위원수를 “3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2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 라.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 사.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 아.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구청장·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11조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장 성평등촉진 정책

제13조(적극적 조치) 시장·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 9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시장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여성고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분야의 공무원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7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① 시장은 가정·학교·영유아 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장애인·한부모·미혼모·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4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주요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주간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제2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4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분석평가의 시기·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37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4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
 2. 제29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위원회 위원
 3.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운용심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기금의 자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은 각각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